

#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 심사보고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732 |
|----------|-----|

2009. 4. 1.  
기획행정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. 3.13. 광진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9. 3.23.
- 다. 상정일자 : 2009. 3.26.

## 2. 개정사유

밝고 건전한 사회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구민을 찾아 표창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중 구민대상의 종류를 현실여건에 맞도록 조정하고, 수상후보자의 추천 및 신원조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여 공정한 수상자 선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구민대상의 종류를 조정(제3조)
  - “사회봉사부문, 지역경제발전부문, 모범청소년부문, 환경보호부문”을 “경제발전부문, 사회복지부문, 환경·자원봉사부문, 보건 의료부문, 청소년육성부문”으로 현실화
- 나. 수상후보자에 대한 현지조사 및 신원조회 신설(제7조)

- 다. 수상후보자 추천시 구민 10인 이상의 연서 내용 신설(제9조)
- 라.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 신설(제10조의 2)

##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○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구민대상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일부 신설 및 명칭변경 등 조정하고 아울러 수상후보자의 공적 현지조사 및 신원조회, 후보자 추천 규정 등을 강화하여 공정한 수상자를 선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,

주요 개정내용은

##### 1. 구민대상 종류 신설, 명칭변경 등 일부 조정 : 안 제3조

- 신 설 : 보건의료부분
- 명칭 및 통·폐합  
지역경제발전부분 → 경제발전부분    모범청소년부분 → 청소년육성부분  
사회봉사부분 → 사회복지부분    환경보호부분 → 환경·자원봉사부분,

##### 2. 공적내용 현지조사 및 후보자 신원조회 신설 : 안 제7조제3항

- 수상후보자의 신원조회 및 공적내용 현지조사 등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한 심사

##### 3. 수상후보자 추천 규정 강화 : 안 제9조

- 수상후보자 추천시 10인이상의 연명을 받아 추천토록 요건을 강화한 규정은 무분별한 추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봄
- 다만, 다양한 수상후보자 발굴을 위해 개인 뿐만 아니라 부분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, 학교장 등으로 추천권자를 확대하는 것도

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봄

※ 각 구별 후보자 추천권자 참조(구민 10인이상 13개구, 30인이상 6개구 등)  
광진구민의 귀감이 되는 모범 구민을 선정·포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관련 규정 등의 범위내에서 광진구의 여건과 특색에 맞도록 정비되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

- 2 -

## 5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없음

## 6. 토 론

○ 반대토론 : 없음

○ 찬성토론 : 없음

## 7. 심사결과

○ 재석위원 6인중 찬성 6인으로 수정(내용:별첨)가결

## 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## 《신·구·수정 조문 대비표》

서울특별시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현행  | 개정안  | 수정안  |
|---|--|--|
| <p>제3조(구민대상의 종류)이 구민대상은 <u>7개부문</u>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사회봉사부문</u></p> <p>3. <u>모범가정부문</u></p> <p>4. <u>지역경제발전부문</u></p> <p>5. <u>문화·체육진흥부문</u></p> <p>6. <u>모범청소년부문</u></p> <p>7. <u>환경보호부문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설&gt;</p> <p>제7조(회의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설&gt;</p> | <p>제3조(구민대상의 종류)이 구민대상은 <u>8개부문</u>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모범가정부문</u></p> <p>3. <u>경제발전부문</u></p> <p>4. <u>문화·체육진흥부문</u></p> <p>5. <u>사회복지부문</u></p> <p>6. <u>환경·자원봉사부문</u></p> <p>7. <u>보건의료부문</u></p> <p>8. <u>청소년육성부문</u></p> <p>제7조(회의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위원회는 추천서·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며,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및 신원조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 | <p>제3조(구민대상의 종류) (개정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~ 7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8. <u>청소년육성부문(모범청소년 포함)</u></p> <p>제7조(회의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삭제&gt;</p> |

| 현행   | 개정안  | 수정안   |
|--|--|---|
| <p>제8조(간사와 서기) ① (생략)</p> <p>②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<b>총무과 동행정담당주사</b>로 한다.</p> <p>제9조(수상후보자 추천) 광진구민은 <b>누구나 구청장이</b> 공고하는 기간내에 <b>동장</b>을 통해 대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b>&lt;신설&gt;</b></p> | <p>제8조(간사와 서기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</p> <p>-----</p> <p>----- <b>담당주사</b></p> <p>-----</p> <p>제9조(수상후보자 추천)-----<b>10인이상 의 연명을 받아 구청장이</b></p> <p>-----</p> <p>-----<b>동장 또는 부서장</b>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b>&lt;신설&gt;</b></p> <p><b>제10조의2(수당)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b></p> | <p>제8조(간사와 서기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(개정안과 같음).</p> <p>제9조(수상후보자 추천)-----<b>10인이상의 연명 또는 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, 학교장 등이 추천하는 경우 구청장이</b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<b>제9조의2(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확인) 추천된 수상 후보자에 대하여는 공적사실 여부를 철저히 현지조사 및 신원조회 등 확인 후 위원회에 제출한다.</b></p> <p>제10조의2(수당) (개정안과 같음)</p> |